

119구급대원의 법적책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임재만* · 윤석정* · 임관수* · 강신갑** · 최은숙** · 서경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700년대 전쟁터에서 초기의 외상처치와 신속한 이송을 통한 사망률의 감소를 위하여 시작된 응급 의료전달체계의 개념은 현대의 응급환자이송체계로 발전하여 선진국가의 경우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¹⁾.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그동안 법률의 제정·전문 인력의 양성·이송수단 및 정보통신체계의 구성·재원의 확보 등 체계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성과를 이루었다.

응급의료체계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가 환자의 증상에 기초하여 임상적으로 밝혀진 진단과 치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최적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최단시간에 이송되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받았더라면 생존하였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예방가능사망률(preventable death)이다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예방가능사망률은 1999년 50.4%³⁾, 2004년 39.6%⁴⁾로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선진

국의 10%대와 비교하여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래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관심은 이처럼 낮은 예방가능사망률과 심정지환자소생률을 어떻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급업무는 1970년대에 대전 및 부산의 일부 소방관서에서 미군의 임여차량을 이용하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 이전까지는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부상자만을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차원이었으나, 1983년 12월 31일 소방법 개정으로 구급업무가 소방기관의 고유 업무로 인정되고, 전문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속적인 보강이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병원 전(前) 단계 응급의료의 중심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⁵⁾. 하지만 이러한 구급업무가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하는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이유는 화재진압 등의 다른 업무와 비교하여 월등히 많은 출동과 교통사고의 가능성, 독극물이나 전염성질환에의 노출, 음주자와 정신질환자의 폭력으로 인한 신변의 위험,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 음주자로부터의 욕설과 몸싸움, 환자를 들것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의 부상가능성, 범죄 또는 고층에서의 추락 등으로 신체가 심하게 손상된 환자를 접해야 한다는 점과 법적인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트레스요인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방가능사망률과 심정지환자소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19구급대에게 요구되는

* 대전북부소방서

** 국립공주대학교 영상보건대학 보건학부
전문응급구조학 전공

공주대학교 건강산업연구소 연구원

*** 대전보건대학 응급구조과

것은 병원 전(前) 단계에서 응급환자의 상태를 적절하게 판단하고 소생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5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에 의하면 심정지 환자에 대하여 심정지의 확인 및 기본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비율은 각각 89.7%와 67.5%로 높았으나, 전문응급처치를 시행한 비율은 기관 내 삽관 0.0%, 정맥로 확보 1.3%, 자동제세동기 사용 5.3%로 지극히 낮게 나타났다. 심인성 흉통이 의심되는 환자와 천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산소를 투여한 비율은 55.3%와 84.6%로 높았으나, 약물을 투여한 경우는 니트로글리세린 10.6%, 기관지확장제 0.0%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저혈당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저혈당을 확인한 경우는 32.9%였으나, 포도당을 투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즉, 상대적으로 높은 숙련도와 주의가 요구되는 전문응급처치에 대하여는 시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의 전문응급처치 시행률이 낮은 요인으로는 부족한 현장인력·현장에서의 응급처치보다는 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요구하는 환자나 보호자의 행태, 그리고 해당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따르는 법적인 책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불만족스러운 구급서비스에 대한 민원이나 소송의 제기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119구급대를 상대로 하는 분쟁은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응급처치보다는 실수의 가능성이 낮은 (기본)응급처치만을 시행하도록 변화시키는 등의 심리적인 위축과 방어적인 행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⁷⁾. 그러나 지금까지 119구급대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에 대한 연구⁸⁾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선 구급대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법적인 책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의 정도를 측정하여 현장에서 숙련도와 주의가 요구되는 전문응급처치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일선 119 구급대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법적인 책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현장에서 전문응급처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119 구급대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정도를 파악한다.
- (2) 119 구급대원의 법적 책임에 대한 학습, 교육정도를 파악한다.
- (3) 119 구급대원의 법적 환경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정도를 파악한다.
- (4) 119 구급대원의 자격보유여부에 따른 법적 책임인지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5) 119 구급대원의 구급경력에 따른 법적 책임인지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6) 119 구급대원의 출동횟수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광역단체 이상에서 근무하는 일부의 구급대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전체 구급대원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대전광역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구급대원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의 각 2개 소방서 직할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 2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방법 및 기간

조사방법 및 기간은 2008년 4월 30일 각 소방서에 설문지를 첨부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일선 구급대원에게 전달하여 작성하게 한 후, 각 소방서별로 2008년 6월 4일까지 문서수발경로 또는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3. 분석방법

통계분석은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 법적 책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정도와 법적 책임에 대한 학습 및 교육정도와 교육의 필요성, 법적 분쟁발생의 향후 전망은 서술통계를 이용하였고, 자격보유여부와 구급경력에 따른 법적 책임 인지 정도의 차이, 출동횟수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직업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76.6%, 여자 23.4%로 남자가 많았고, 연령은 20대 8.5%, 30대 57.7%, 40대 33.8%로 30대와 40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직업적 특성으로 계급은 소방사 29.4%, 소방교 51.2%, 소방장 19.4%이었다. 구급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3년 이하 30.8%, 3~5년 20.9%, 5~10년 20.9%, 10년 이상 27.4%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구급업무와 관련한 자격보유현황은 1급응급구조사 32.2%, 2급응급구조사 36.2%, 간호사 4.0%, 기타 16.1%, 미보유 11.6%였으며 월 출동횟수는 61~90회가 36%로 가장 많았고, 31~60회 27%, 120회 이상 22.5%, 91~120회 12.5%, 30회 이하 2.0%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

(n = 202)			
구 분		인원	(%)
성 별	남	154	(76.6)
	여	47	(23.4)
연 령	21~30세	17	(8.5)
	31~40세	116	(57.7)
	41세 이상	68	(33.8)
계 급	소방사	59	(29.4)
	소방교	103	(51.2)
	소방장	39	(19.4)
자 격	1급응급구조사	64	(32.2)
	2급응급구조사	72	(36.2)
	간호사	8	(4.0)
	기타	32	(16.1)
	보유하지 않음	23	(11.6)
구급경력	3년 이하	62	(30.8)
	3~5년	42	(20.9)
	5~10년	42	(20.9)
	10년 이상	55	(27.4)
출동횟수(월)	30회 이하	4	(2.0)
	31~60회	54	(27.0)
	61~90회	72	(36.0)
	91~120회	25	(12.5)
	120회 이상	45	(22.5)

2. 법적책임의 심리적 부담감

(1) 법적책임의 심리적 부담감 정도

구급대원으로 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인 책임에 대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부담스럽다 38.0%, 부담스럽다 56.0%, 보통이다 4.5%, 부담스럽지 않다 1.0%,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0.5%로 응답하여 94.0%의 구급대원이 법적인 책임에 대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분석하였을 때는 평균 4.30으로 높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법적 책임의 심리적 부담감 정도
(n = 200)

구 분	명	비율(%)	평균±표준편차
매우 부담스럽다	76	38.0	
부담스럽다	112	56.0	
보통이다	9	4.5	4.30±.650
부담스럽지 않다	2	1.0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1	0.5	

(2)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환자의 유형

어떠한 유형⁹⁾의 환자에 대하여 가장 많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부담이 있다고 응답한 163명을 분석하였고 그중 심혈관계 응급증상(심장정지·기습통증·호흡곤란 등) 52.1%, 신경학적 응급증상(의식장애·두부손상 등) 16.0%, 정신과적 응급증상(타인을 공격하는 성향의 환자 등) 16.0%, 외과적 응급증상(화상·골절·장기노출 등) 4.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모든 항목에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 ‘만취환자의 폭력적인 행동’ 등이 있었다(표 3)。

〈표 3〉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환자유형

(n = 163)

구 분	명	비율(%)
심혈관계 응급증상	85	52.1
신경학적 응급증상	26	16.0
정신과적 응급증상	26	16.0
외과적 응급증상	8	4.9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5	3.1
중독 및 대사장애	2	1.2
출혈	2	1.2
소아과적 응급증상	1	0.6
이물질에 의한 응급증상	1	0.6
안과적 응급증상	0	0.0
알레르기 응급증상	0	0.0
기타	7	4.3

(3)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응급처치 종류

어떠한 응급처치술기¹⁰⁾에 대하여 가장 많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상자

중 153명이 응답하였고 그중 기관내 삽관·후두마스크 40.4%, 자동제세동기 16.3%, 정맥로 확보·수액(약물)투여 10.8%, 기본심폐소생술 7.2%, 신체삽입된 이물질 제거 5.4%, 외부출혈 지혈 및 창상처치 5.4%, 부목 이용한 사지·척추고정 1.8%, 활력징후 측정 1.2%, 산소투여 0.0%의 순서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응급처치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보다는 만취자 등의 비응급환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크다’, ‘무자격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 ‘수요밸브(인공호흡기) 사용’ 등이 있었다(표 4)。

〈표 4〉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응급처치의 종류

(n = 153)

구 분	명	비율(%)
기관내 삽관·후두마스크	67	40.4
자동제세동기	27	16.3
정맥로 확보·수액(약물)투여	18	10.8
기본심폐소생술	12	7.2
신체 삽입된 이물질 제거	9	5.4
외부출혈 지혈 및 창상처치	9	5.4
부목 이용한 사지·척추고정	3	1.8
활력징후 측정	2	1.2
산소투여	0	0.0
기타	6	3.6

3. 법적 책임에 대한 학습 및 교육정도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 구급업무에 대한 법적 인 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인적으로 학습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학습한 경험이 있다 38.4%, 한 번도 학습한 경험이 없다 61.6%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학습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 빈도를 묻는 질문에는 월 평균 1.4회로 응답하였다.

또한 구급대원의 법적인 책임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40.0%,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60.0%로 응답하였다.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평균 2.4회로 응답하였다(표 5).

**〈표 5〉 법적책임에 대한 학습 및 교육정도
(n = 202)**

구 분	명	비율(%)
개인적 학습경험 있다	76	38.4
없다	122	61.6
교육 받아본 경험 있다	80	40.0
없다	120	60.0

4. 법적 환경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구급대원에게 구급업무와 관련된 법적책임·법적환경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다 40.8%, 필요하다 53.2%, 보통이다 4.0%, 필요하지 않다 2.0%, 전혀 필요하지 않다 0.0%로 응답하여 94.0%의 구급대원이 법적인 환경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점 척도에서 평균 4.33점으로 높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법적 환경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n = 202)**

구 분	명	비율(%)	평균±표준편차
매우 필요하다	82	40.8	
필요하다	107	53.2	
보통이다	8	4.0	4.33±.649
필요하지 않다	4	2.0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0	

5. 민원을 제기 받은 경험 정도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환자 측으로부터 강한 민원(불만)을 제기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제기 받는 경험이 있다 41.3%, 없다 58.7%로 응답하였다.

소송이나 강한 민원을 제기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동안의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평균 2.5회로 응답

하였다. 당시에 받았던 스트레스의 정도를 0(약)-10(강)의 숫자로 표시하는 질문에는 평균 8.8로 응답하였다(표 7).

**〈표 7〉 법적 문제 발생 또는 민원을 제기 받은 경험유무와 스트레스
(n = 196)**

구 분	명	비율(%)
있다	81	41.3
평균횟수	평균 2.5회	
스트레스정도(1-10점)	평균 8.8점	
없다	115	58.7

6. 대상자의 자격보유 여부와 구급경력에 따른 법적 책임인지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자격보유 여부와 구급경력에 따른 법적 책임인지 정도의 차이는〈표 8〉과 같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지 알고 있는가에 대한 항목에서는 전체 그룹에서 평균 3.36(.844)점(5점 척도)으로 대체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었다. 자격증 보유여부에 따라서는 1급응급구조사는 평균 3.41점, 2급응급구조사는 평균 3.51점, 간호사는 평균 3.50점, 기타는 평균 3.16점,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그룹은 평균 2.91점으로 자격보유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2.874$, $p=.02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대상자의 출동횟수(월)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출동횟수(월)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표 9〉과 같다.

119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민원(불만)을 제기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항목에서는 ‘있다’

〈표 8〉 자격보유 여부와 구급경력에 따른 법적 책임인지 정도의 차이 (n = 202)

	구 분	명	(%)	M± SD	F	p
자격 보유여부	1급응급구조사	64	(32.2)	3.41± .771	2.874	.024*
	2급응급구조사	72	(36.2)	3.51± .822		
	간호사	8	(4.0)	3.50± .756		
	기타	32	(16.1)	3.16± .920		
	보유하지 않음	23	(11.6)	2.91± .900		
구급경력	3년 이하	62	(30.8)	3.13± .859	2.979	.083*
	3~5년	42	(20.9)	3.38± .854		
	5~10년	42	(20.9)	3.62± .697		
	10년 이상	55	(27.4)	3.39± .878		

* p < .05

〈표 9〉 출동횟수(월)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 (n = 81)

	구 분	명	M± SD	F	p
출동횟수(월)	30회 이하	2	4.00± 1.414	8.190	.000***
	31~60회	15	9.60± 1.056		
	61~90회	29	8.90± 1.047		
	91~120회	12	8.25± 1.712		
	120회 이상	22	8.95± 1.647		

*** p < .001

고 응답한 대상자가 81명(41.3%)을 분석하였다. 월 출동횟수에 따라 30회 이하는 평균 4.00점, 31~60회는 평균 9.60점, 61~90회는 평균 8.90점, 91~120회는 평균 8.25점, 120회 이상은 평균 8.95점으로 월 출동횟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F=8.190$,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법적분쟁발생에 대한 향후 전망

향후 119구급대를 상대로 하는 민원의 제기나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증가할 것이다 99.0%,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1.0%로 나타났다(표 1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63.1%, 구급대원에 대한 기대감 향상 29.5%, 무자격 구급대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 5.1%로 나타났다(표 11). ‘기타’ 의견으로

‘환자의 보험과 관련하여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10〉 법적 분쟁발생 향후 전망 (n= 201)

	구 분	명	비율(%)
증가할 것이다		199	99.0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2	1.0

〈표 11〉 법적분쟁의 증가를 예상하는 이유

(n = 176)

	구 분	명	비율(%)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111	63.1
구급대원에 대한 기대감 향상		52	29.5
무자격구급대원		9	5.1
구급대원 응급처치능력 부족		1	0.6
기타		3	1.7

IV. 고 칠

200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소방방재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구급대원 중 구급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구급대원의 비율은 60.7%(1급응급구조사 24.8%, 2급응급구조사 33.2%, 간호사 2.7%)였고,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급대원은 39.3%였다¹¹⁾. 본 연구에서는 자격을 보유한 구급대원이 72.4%(1급응급구조사 32.2%, 2급응급구조사 36.2%, 간호사 4.0%)였고, 미보유 11.6%, 기타 16.1%였다. ‘기타’로 응답한 경우의 대부분이 소방에서의 2주 교육과정 이수자이므로 사실상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급대원의 비율은 27% 정도였으므로 앞으로 앰뷸런스를 운영하는 119구급대원들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환자에게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급응급구조사의 확충방안이 필요하다.

구급대원으로 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인 책임에 대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94.0%의 구급대원이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정지·흉통·호흡곤란 등의 심혈관계 응급증상의 환자에 대하여 가장 많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에서 전문응급처치시행 비율이 0~5.3%로 저조하게 나타났던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향후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심리적으로 가장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응급처치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는 기관내 삽관·후두마스크(40.4%), 자동제세동기(16.3%), 정맥로 확보·수액(약물)투여(10.8%)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급처치는 2005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에서도 기관내 삽관 0.0%, 정맥로 확보 1.3%, 자동제세동기 사용 5.3%,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10.6%, 기관지 확장약물 투여 0.0%, 포도당 투여 0.0%로 그 시행률이 낮게 나타난 바 있다. 즉, 시행률이 낮은 전문응급처치의 종류와 구급대원이 심리적으

로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전문응급처치의 종류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통하여 전문응급처치의 낮은 시행률에는 법적인 책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지 알고 있는가에 대한 항목에서는 전체 그룹에서 평균 3.36(.844)점(5점 척도)으로 대체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었고 자격증 보유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2.874$, $p=.02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간의 구급교육을 받았거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그룹은 1, 2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그룹에 비해 법적 책임을 낮게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앞으로 119구급차량에 탑승하는 구급대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교육은 물론 자격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41.3%의 구급대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거나 강한 민원(불만)을 제기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횟수는 평균 2.5회였다. 당시에 받았던 스트레스의 정도를 0(약)-10(강)의 숫자로 표현하는 질문에는 평균 8.84로 응답하여 소송이나 민원의 제기가 구급대원에게 강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월 출동횟수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8.190$,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횟수가 많으면 스트레스 정도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출동횟수가 많은 지역의 구급대원들이 있는 소방관서에서는 스트레스관리팀의 운용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STD)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구급대원의 스트레스요인의 적극적인 해소와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스트레스요인 중 특히 법적인 책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법률전문가로부터 구급대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교육을 정기적으

로 실시하고,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겪은 상황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구급대원이 자신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법적인 책임을 고려한 적절한 대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99.0%의 구급대원이 향후 119구급대를 상대로 하는 민원의 제기나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로는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63.1%)·구급대원에 대한 기대감 향상(29.5%)을 꼽았다. 60% 정도의 구급대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법적인 책임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개인적 학습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방서 등에서의 교육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9구급대가 법적인 문제에 취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일선 구급대원에서 법적인 책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4.0%로 나타난 점을 통하여 구급대원에게 향후 응급처치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못지않게 구급업무와 관련한 법률소양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구급대원은 스스로 자신의 업무영역과 관련한 법률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관서에서는 각종 분쟁사례의 소개·구급현장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의 법률적 해석을 통한 적절한 대처방법의 교육·법률전문가의 상담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법적인 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에서 현장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법적 책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정도와 법적 책임에 대한 학습 및 교육정도와 교육의 필요성, 법적 분쟁발생의 향후 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광역자

치단체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선 구급대원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구급대원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부분의 구급대원(94.0%)이 법적인 책임에 대하여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9.0%의 구급대원이 향후 구급대를 상대로 하는 민원의 제기나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2) 가장 많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환자의 유형은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정지·흉통·호흡곤란 등의 심혈관계 응급증상(52.1%)이었다. 가장 많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응급처치의 종류로는 기관내 삽관·후두마스크(40.4%), 자동제세동기(16.3%), 정맥로 확보·수액(약물)투여(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대부분의 구급대원(94.0%)이 구급업무와 관련한 법적인 환경 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41.3%의 구급대원이 구급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거나 환자 측으로부터 강한 민원(불만)을 제기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민원의 제기는 구급대원에게 강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월 출동횟수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8.190$,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지 알고 있는가에 대한 항목에서는 전체 그룹에서 평균 3.36(.844)점(5점 척도)이었으며 자격보유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F=2.874$, $p=.02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향후 119구급대를 상대로 하는 민원의 제기나 소송이 99%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63.1%, 구급대원에 대한 기대감 향상 29.5%, 무자격 구급대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 5.1%로 나타났다.

소방에서는 그동안 전문 인력을 특별채용하고, 현대식 장비¹²⁾를 보강하는 한편 구급대원을 응급의료센터에 파견하여 교육시키는 등 구급업무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구급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과 함께 일선 구급대원이 느끼는 법적인 책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해소하여 전문응급처치에 보다 적극성을 갖도록 하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최덕기. 한국의 응급의료 이송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p.28-29.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1999. pp.27-28.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1999. pp.33-34.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응급의료 운영체계 평가. 2005. pp.102-103.
- 소방방재청. 소방대응행정자료 및 통계. 2009. p.269.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응급의료 운영체계 평가. 2005. p.28.
- 김선중. 의료과오소송법. 박영사. 2005. pp.19-20.
- 배현아. 119 구급대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별표 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별표 14].
- 소방방재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2009. p.273.
-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구급차의 장비기준].

=Abstract =

Psychological burden for legal responsibility of 119 emergency personnels

Jae-Man Lim* · Seok-Jeong Yun* · Gwan-Su Lim*
 Shin-Kap Kang** · Eun-Sook Choi** · Kyung-Hee Seo***

Purpose : To grasp the mental burden for legal responsibility that rescue members have in the performance of job.

Method : Questionnaire was presented to rescue members serving in 2 direct control safety centers of fire station located in Seoul, Daejon, Incheon, Kwangju, Busan, Daegu and Ulsan.

Results :

1. Questioned whether they have mental burden for legal responsibility while performing job on the site, the rescue members responded : very burdensome in 38.0%, burdensome in 56.0%, moderate in 4.5%, not burdensome in 1.0%, no burden at all in 0.5%.
2. Questioned on the first aid treat for which they have the most mental burden, the rescue members responded : intubation into trachea·laryngeal mask airway(LMA) in 40.4%,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 in 16.3%, securing vein·providing sap(medicine) in 10.8%, basic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n 7.2%, eliminating foreign matters inserted into body in 5.4%, stanching external bleeding and treating injury in 5.4%, fixing extremities and spine by using splint in 1.8%, measuring the symptom of vitality in 1.2%, providing oxygen in 0.0%.
3. Questioned whether experiencing legal problem or firm petition(complaint) raised by patient while serving as rescue members, they responded : experiencing a complaint in 41.6%, experiencing no complaint in 58.4%. Asked to indicate the stress level in the scale of which they suffered when lawsuit or firm petition was raised, 0(weak)–10(strong), they answered 8.8 in average.
4. Questioned whether 119 rescue members put the legal responsibility in case that they cause damage to patients intentionally in performing, they responded to the inquiry 3.66 in average(of 5.00). It represented meaningful differences($F=2.874$, $p=.024$) whether they had license or not.
5. In future, legal action will raise against the rescue member by 99% because of people's rights improvement(63.1%), high expectations for the rescue system(29.5%), non-licensed rescue members(5.1%).

Conclusion : It was found that the rescue members had severe mental burden for advanced life support which was investigated to have low enforcement rate in the preceding research, for instance, intubation into trachea·securing vein·management by using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 To improve the qualitative level of rescue service in the fire fighting, it may be required to construct the environment that eliminates the mental burden of rescue members for legal responsibility.

Key Words : 119 emergency personnel, legal responsibility, psychological burden, legal dispute, improvement of qualitative level

* Daejon North Fire Station

**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 Daejon Health Sciences College, Department of emergency rescue